

제4장 보건 · 사회복지 행정

1. 생활보호 행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1) 사회복지 업무의 연혁

생활보호사업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自活)을 돕는 사업으로서 주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시대의 변화 등에 따라 지원방법, 지원기준, 전달체계, 관련용어 등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① 1950년대

주로 6·25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미망인, 무의탁 노약자에 대한 최저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② 196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도·농간 격차 심화와 전통사회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영세민들을 지원하기위해 1961년 생활보호법,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의료보험법 등 관련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였다. 우리 지역에서는 1961년 보령군청에, 그리고 1963년 대천읍에 전담부서인 사회계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였다.

③ 1970년대

복지국가의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1973년 국민연금법, 1977년에는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며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보건위생 문제의 개선과 영세민 구호, 취로사업(就勞事業) 등 생활보호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한 바 1971년에는 군청에 부녀아동계, 1974년에는 복지계를 추가로 신설하고 1979년에는 전담부서를 사회과로 승격, 업무를 강화하였다.

④ 1980년대

1981년 이후에는 복지국가이념 구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의 복지권이 강화되어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시기로서 1981년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등을 제정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영세민생활보호, 의료구호(醫療救護) 그리고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제도 본격 실시 등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이념의 달성에 한걸음 다가섰다.

⑤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 현실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989년 장애인 복지법 전면개정을 비롯하여 1991년의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과 영유아보호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을 제정하여 현실적 수준의 사회복지에 미치지 못하는 바 급증하는 사회복지 업무의 수요에 따라 1991년에 대천시청과 보령군청의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를 분리하였고 2007년에는 사회복지과를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와 '행복 나눔과'로 분리하여 전담부서를 세분화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도 서구의 선진국 수준으로 점점 그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의 연도별 예산을 보면 1996년 급격하게 줄어든 후 차츰 늘어나 이제는 전체 예산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보건 및 환경개선 예산을 제외한 순수 사회복지 예산임)

사회복지 예산의 변화

단위 : 억원

구 분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일반예산총액	478	691	808	1,148	1,490	1,575	1,930	2,646	2,523	3,181
사회복지부문	82	107	137	114	122	158	232	383	378	599
비율(%)	17.3	15.5	16.9	9.9	8.2	10.0	12.1	14.5	14.9	18.8

1990-1994년은 대천시와 보령군 합계임

(2) 생활보호 대상자의 종류

1961년 12월 30일 제정, 공포한 생활보호법에 의하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①65세 이상의 노쇠자 ②18세 이하의 아동 ③임산부 ④불구폐질, 상이 기타 정신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 ⑤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을 실시하였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의 구분을 ①거택보호 대상자와 ②사회복지

시설에 수용, 보호하는 시설보호 대상자, ③노동력은 있으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시키고 구호양곡 등을 지급하는 자활지도 대상자 등이 있었으며 이들의 책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매년 1회씩 시장군수가 조사 책정하였으나 이 밖에도 수해 등 재난을 당한 ④이재민구호가 있고 특히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⑤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는 거택보호와 아울러 학비까지 지원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가정보호기능을 강화하였다.

지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하고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자활급여자 등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다.

(3)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연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자활급여	
	가구	인원(명)	가구	인원(명)	시설수	인원(명)	가구	인원(명)	가구	인원(명)
1980	1,933	9,753	655	1,139	4	365	-	-	1,728	8,249
1985	2,674	11,533	688	1,507	4	388	-	-	1,986	9,638
1990	3,191	12,465	818	1,776	4	359	-	-	2,373	10,330
1995	3,324	9,551	1,234	2,503	4	331	-	-	2,090	6,717
2000	3,386	7,466	3,364	7,068	5	385	5	13	9	9
2005	3,781	7,288	3,719	6,754	5	445	26	37	31	52
2006	3,810	7,273	3,724	6,707	6	434	51	92	29	40
2007	3,606	6,707	3,431	5,965	6	456	140	234	29	52

(4)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내역

① 기초생활 수급자(거택보호 대상자)의 보호 내용

가. 1960~1999년까지

- 1960년대부터 1978년까지는 밀가루, 쌀, 보리 등 곡류를 지원하였다.
- 1979년에는 곡류와 함께 연료비와 중학생 자녀 수업료까지 지원하였다.
- 1990-1994년에는 곡류, 중학생자녀 수업료, 실업고생 교육비까지 지원하였다.
- 1995년부터는 곡류로 지원하던 주식비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중학생, 실업고생은 물론 상위 30% 이내의 인문고생 수업료까지 지원하였다.

연도	보호 내용(곡류.밀가루1일/1인, 부식비 월/가구, 연료비월/가구)	환가액(1인/월)
1965	밀가루 250g	244원
1970	밀가루 250g	259원
1975	밀가루 300	1,010원
1977	밀가루 350g	1,195원
1978	쌀 101g, 보리쌀 41g, 밀가루 350g	2,556원

1979	쌀 202g, 보리쌀 82g, 연료비(월) 2,000원	5,495원
1980	중학생자녀 수업료 전액지원	
1987	쌀 288g, 보리쌀 138g, 부식비(월) 2,500원, 연료비(월) 2,500원, 중학생자녀 수업료 전액지원	8,885원
1990	쌀 341g, 보리쌀 85g, 부식비 세대주 280원+세대원 30원, 연료비(일) 370원, 중학생자녀 수업료 전액지원	
1995~99	쌀 341g, 보리 85g, 부식비 세대주 280원+세대원 30원 연료비(일) 370원, 중학생·실업고생 입학금·수업료전액지원 생계보호비 차등지급(주, 부식비현금지원), 중학생·실업고생 입학금·수업료전액지원, 인문고생 상위30%이내 학생 지원	

나. 2000년 이후

2000년부터는 중전의 지원금에 학생들의 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도 지원하였다. 다만 국민생활보장사업의 실시로 최저생계비(생계, 주거, 교육, 장애, 해산급여)의 기준을 세운 후 생활의 어려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연 도	보 호 내 용
2000	국민생활 보장사업 실시, 최저생계비를 1인 월/324,011원을 기준으로 하고 어려운 정도에 따라 38구간(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급 중고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2005	최저생계비를 1인 월/401,466원(생계비 310,498원, 주거비 33,000원, 기타 지원금)으로 정하고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중고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2006	최저생계비를 1인 월/418,309원(생계비 324,909원, 주거비 33,000원, 기타 지원금)으로 정하고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중고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2007	최저생계비를 1인 월/425,921원(생계비 339,978원, 주거비 33,000원, 기타 지원금)으로 정하고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중고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② 자활급여자에 대한 지원

자활지도사업은 1964년부터 미국의 구호양곡과 국내자원을 활용하여 영세민의 구호와 함께 자활자립을 위한 생활기반 조성과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고자 PL 480에 의한 구호양곡으로 시작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영세민을 취로시킨 것이 시작인데 1973년에 중단하였다. 1974년 이후에는 정부재원으로 취로사업이란 이름으로 실업자와 영세민에 대한 노임지급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왔으며 지금은 자활급여자라고 한다.

③ 연도별 생활보호 실적

단위: 가구/ 명/백만원

연 도	거 택 보 호			시 설 보 호			취 로 구 호		
	가구수	대상인원	지원액	시설수	수용인원	지원액	사업장수	취로인원	노임액
1980	565	1,139	43	4	365	19,896	28	23,456	28
1985	688	1,507	56	4	388	21,459	27	21,735	95
1990	818	1,776	71	4	359	19,855	28	11,358	125
1995	1,234	2,503	-	4	331	-	-	-	-
2000	3,364	7,068	-	5	385	-	-	-	-
2005	3,719	6,754	13,532	5	445	522	23	2,256	960
2006	3,724	6,707	14,854	6	434	595	25	2,304	1,157
2007	3,431	6,965	13,754	6	456	664	23	2,160	1,126

2) 장애인 복지 행정

(1) 장애인 복지행정의 연혁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제정하고 1982년에는 동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인권신장, 장애인편의시설을 강화토록 하였다. 1994년 12월 30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좀 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구체화하였으며 1997년 4월 10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모든 시설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한편 보령시는 2003년 10월 기구 개편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담당을 신설하여 관련 시책을 전담하고 있다.

(2) 장애인 등록상황 (총 7,634명)

(단위 : 명)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	심장	신장	호흡기	안면	장루	간질
4,229	518	716	754	784	6	239	33	112	160	3	36	44

2008년 6월 현재

(3)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① 충남정심원, 정심요양원

주교면 관창리 407-7번지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로 건물규모는 11,464㎡이며 충남정심원 270명, 정심요양원 42명의 지적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다. 1967년 10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② 이야기마을

용천읍 수부리 697-1번지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로 건물규모는 600.2m²이며 지적장애인 30명을 수용하고 있다. 2002년 12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령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③ 정심작업장

주교면 관창리 산 14번지에 있는 장애인 작업재활시설로 장애인 40명을 수용하여 작업을 통한 재활사업을 한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④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명천동 705-9번지에 있는 장애인 작업재활시설로, 34명의 장애인을 수용하여 작업을 통한 재활사업을 한다.

(4) 장애인단체 현황

(단위 : 명)

단 체 명	회원수	소 재 지	운 영 시 설
지체장애인협회	3,525	대천동 618-9	장애인보호 작업장 편의지원센터
농 아 인 협 회	754	대천동 618-9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협회	716	대천동 170-1	심부름센터
신체장애인협회	637	대천동 167-14	
이 밖에도 중증자립연대, 장애인부모회 등이 있음			

(5) 장애인 생활지원 실적

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가. 저소득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안은 2007년 지원 실적>

-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비 및 수당 지원 (3,018가구/ 2,711,219천 원)
- 1급 중증장애인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서비스지원(399명)
-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22명/ 62,565천 원)
- 장애인 단체 운영비 및 행사지원 (4단체/ 54,600천 원)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심의 및 실태조사(신규 건축허가 및 공중이용시설)

나. 시설 장애인지원<()안은 2007년 지원 실적>

- 대상시설 : 충남정심원, 정심요양원, 이야기마을
- 지원내역 : 운영비, 관리비 지원(3개소/ 4,215,141천 원)
정기점검을 통한 사고예방과 인권보호
- ※ 2008년 이야기마을 신축 (9억 8400만 원)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안은 2007년 지원 실적>

○ 대상시설 및 생산품

시 설 명	작업인원	종사자	작 업 내 용
정 심 작 업 장	40	4	자동차 부품조립 및 영농사업
장애인 보호 작업장	34	3	복사용지, 면장갑생산

- 지원내역 :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지원(2개소 / 218,279천 원)
- 직업재활시설의 확대 : 2008년 농아인협회 작업시설(150,000천 원), 장애인 심부름센터(135,975천 원), 보령시 수화통역센터(135,975천 원) 등 신축

(6) 장애인 지원정책

직접소득보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제도, 장애자부양수당제도 등이 있으며 간접소득보장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책 즉, 장애인 의료비 지급,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 재활기구 보급 및 세금감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 공동주택 공급, 장애인 소득공제, 교통비·통신요금·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이 있고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의무화, 자립 및 창업자금 융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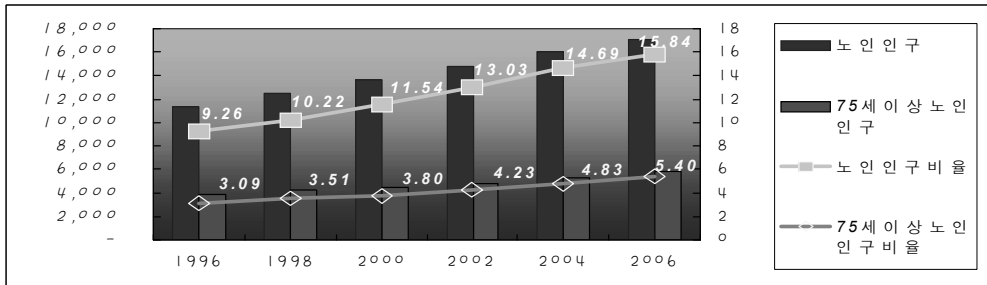
각종 우대정책을 펼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대를 지나 복지시대로 향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등 문제점들이 많아 아직 서구 선진국 수준에 미치려면 좀 더 발전이 있어야 하겠다.

3) 경로 복지 행정

(1) 개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라 하고 14%를 차지하면 ‘고령 사회’ 그리고 21%가 되면 ‘초 고령사회’라 하는데 우리 보령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2004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후 점점 늘어나 2006년 현재 15.9%(충남 평균 13.3%, 전국평균 8.9%)가 되었으며 이를 읍면동별로 보면 농촌지역은 30%가 넘는 지역도 있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특히 75세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 더욱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노인들은 대부분 경제적 빈곤, 각종 급·만성 노인성 질환, 그리고 고독감, 소외감 등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령시에서는 2007년에 사회복지담당을 경로복지담당으로 바꾸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로서는 예산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령시 고령화 추이

(2) 노인인구 현황

읍면동	전 체		노 인 인 구 수 (명)			
	인구수	가구수	계	기초생활보장	일반노인	비율%
계	107,613	42,349	16,736	1,860	14,876	15.6
웅 천 읍	7,828	7,828	1,869	183	1,686	21.5
주 포 면	1,935	913	415	27	388	20.1
주 교 면	5,928	2,366	1,093	73	1,020	17.2
오 천 면	5,967	2,860	1,307	117	1,190	19.9
천 북 면	4,372	1,840	1,107	83	1,024	23.4
청 소 면	3,462	1,470	1,074	88	986	28.5
청 라 면	4,809	2,040	1,242	102	1,140	23.7
남 포 면	6,094	2,552	1,592	243	1,349	22.1
주 산 면	3,230	1,459	189	91	98	30.3
미 산 면	2,127	979	345	32	313	14.7
성 주 면	3,118	1,271	519	93	426	13.7
대 천 1 동	17,437	5,285	1,496	113	1,383	7.9
대 천 2 동	7,879	2,977	914	69	845	10.7
대 천 3 동	4,278	11,231	1,126	95	1,031	24.1
대 천 4 동	14,382	5,350	1,256	317	939	6.5
대 천 5 동	7,814	3,353	1,192	134	1,058	14.5

자료: 행복 나눔과, 2007년 12월 31일 현재

(3) 경로복지행정

① 노인생활안정을 위한 사업(2007년 실적)

- 경로연금: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월 40,000원씩 지급. (3,582명/1,789백만 원)
- 노인수당: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월 17,500원씩 지급. (17,747명/2,643백만 원)
- 장수수당: 80세 이상 저소득노인 월 20,000원씩 지급. (2,826명/460백만 원)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28명 파견 675명 수혜, 21억 3700만 원 소요
- 경로잔치 등 지원: 2회 2200만 원

② 노인일자리 창출 (2007년 실적)

구 분	총 계	공 익 형	교 육 복 지 형		자 립 지 원 형	
			교 육 형	복 지 형	시 장 형	인 력 파 견 형
목 표	312	154	39	78	26	13
실 적	310	154	32	85	36	1

③ 노인복지시설 운영

가. 경로복지시설

3개소의 무료 요양시설과 2개소의 유료 요양시설이 있다.

○ 보령요양원

남포면 창동리 568번지에 있는 무료 요양시설로 건물 규모는 838.36㎡이고 65세 이상 노인 51명을 수용하고 있다. 2004년 2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3,900만 원을 보조하여 위탁 운영한다.

○ 보령실버홈

남포면 창동리 560번지에 있는 무료전문요양시설로 건물규모는 2,418㎡이고 65세 이상 노인 107명을 수용한다. 2006년 3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5천 80만 원을 보조하여 위탁 운영한다.

○ 생생꿈마을

주교면 송학리 4-2번지에 있는 무료 요양시설로 건물 규모는 2,093.92㎡이고 65세 이상 노인 37명을 수용하고 있다. 2006년 4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1,850만 원을 보조하여 위탁 운영한다.

○ 샬렘동산

천북면 낙동리 510-1번지에 있는 유료 요양시설로 건물 규모는 1,650㎡이고 65세 이상 노인 16명을 수용하고 있다. 2006년 12월 28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보조하지 않고 자체 운영한다.

○ 성문복지원

천북면 장은리 420번지에 있는 유료 요양시설로 건물 규모는 264㎡이고 65세 이상 노인 19명을 수용하고 있다. 2006년 12월 28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보조받지 않고 자체 운영한다.

나. 재가노인 복지시설

시설 유형	시 설 명	운영 주체	정원	주 소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보령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80	죽정동 703-1
주간보호시설	보령주간노인복지센터	"	9	"
가정봉사원 파견	대전노인복지센터	개인	80	동대동 1622
가정봉사원 파견	보령사랑노인복지센터	개인	80	동대동 771-1

④ 경로당 지원(2007년)

보령시 관내 마을단위 경로당 333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개소당 172만 원씩 총 5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프로그램 관리사를 80회 출장시켜 수준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가를 선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6개소를 신축하고 80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40개소의 경로당에 사업비 2천만 원을 들여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생활체육, 노래교실, 단전요가, 발 마사지, 교양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꾀하였다.

⑤ 노인여가시설 지원

가. 보령 노인종합복지회관

죽정동 703-1번지에 있는 노인여가시설로 건물 규모는 3,122.24㎡이고 60세 이상 노인 500명을 수용하여 취미교실 11개 반, 건강교실 13개 반, 교양교실 14개 반 등 40개 반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2006년 6월 27일에 개원하였으며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이며 연간 운영비는 위탁비 4억 4천만 원, 기타보조 3억 2,200만 원과 자체자금 포함 8억 7,200만 원이다.

나. 천북 노인건강복지회관

천북면 하만리 146-13번지에 있는 노인여가 시설로 건물 규모는 369.83㎡이고 60세 이상 노인 100명을 수용한다. 2006년 8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주체는 '살렘동산'이고 연간 운영비는 보조금 4천만 원과 자체자금 등 7,100만 원이다.



보령시 노인복지회관

⑥ 저소득노인 지원

구 분	2007년실적(명)	예산(천원)
보 청 기	36명	12,240
노 인 건 강 진 단	70명	2,760
경 로 식 당	6개소(145명)	130,500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125명	93,750
바 우 처 사 업	101명	122,718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29명	136,800

4) 여성 복지 행정

(1) 보령시 여성복지행정 연혁

보령시에서는 여성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71년 당시 보령군청에 처음으로 부녀 아동계를 신설하였다. 1973년 이를 복지부녀계로 바꾸고 1974년에는 복지부녀계와 부녀 아동계로 나누었으며 1979년에는 사회과를 신설하였다. 1985년 대천시가 분리되어 대천시청과 보령군청에 각각 부녀아동계를 두었다가 이를 부녀청소년계로 바꾸고 1991년에는 시·군에 가정복지과를 신설하고 부녀복지계를 두었다. 1995년 시·군이 통합되어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로 운영하다가 1998년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이 업무를 처리하였다. 2007년 사회복지과를 행복나눔과로 바꿈에 따라 행복나눔과 여성복지담당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여성복지행정 내용

①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과 요보호 여성자립 지원

1970년대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과 생활개선운동 등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요보호(要保護)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보건진료, 기술교육과 직업 알선 등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부녀복지행정 수준이었다.

② 본격적인 여성운동의 시작

1980년대는 여성복지라 하여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행정으로 바꾸고 남녀 평등을 목표로 여성단체협의회 등을 통한 여성운동을 본격화하였고, 미혼모 지원시설 확충,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였다.

③ 성폭력 및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보호

1990년대는 여성의 인권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사적으로 취급하던 성(性)과 가족의 문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부녀상담실을 운영하며 각종 주민교육이나 학생 교육에 성교육을 병행하였다.

④ 다양한 여성복지 행정

가. 여성의 능력개발 및 활용

-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력개발
-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나. 여성의 인권보호 및 종합지원

-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종합지원 서비스 강화

다.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향상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성차별 편견과 제도의 지속적 개선)
-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3) 여성복지시설

①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 사업주체 : 사단법인 온터두레회
- 규 모 : 1,704.76m²
- 설 립 일 : 1998년 11월 27일
- 소 재 지 : 보령시 동대동 1687
- 운영내역 :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 외 58개 과정.
- 운영실적

연도별	이용 실적(명)	예산 지원(천원)	연도별	이용 실적(명)	예산 지원(천원)
2007	1,049	150,755	2005	1,577	147,039
2006	768	153,764	2000	1,522	18,457

② 대천가족상담센터

- 사업주체 : (재)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보령밀알교회
- 규 모 : 111.0m²
- 설 립 일 : 2000년 7월 20일
- 소 재 지 : 보령시 대천동 170-1(구 군청)
- 운영실적

연도별	이용 실적(명)	예산 지원(천원)
2007	450	52,404
2006	418	10,504
2005	270	10,504

(4) 여성단체 현황

구분	단 체 명	회원수	주 요 활 동 내 역
계		14,349명	
1	생 활 개 선 회	1,100	농촌생활문화의 개선
2	새 마 을 부 녀 회	11,523	생활의식개혁운동
3	걸 스 카 웃	95	여성의 사회활동활성화
4	자 유 총 연 맹 부 녀 회	60	국가의 자유 안보사업에 기여
5	대 한 어 머 니 회	170	어머니들의 자질 향상
6	고 향을 생 각하 는 주 부모임	230	여성들의 권익 신장, 고향의 균형발전에 기여
7	대한적십자사 보령지구협의회	249	능률적인 봉사활동
8	여 성 농 업 인 회	505	농촌문제해결 및 향토문화 계승발전
9	주 부 교 실	217	소비자상담실 및 물가감시센터 운영
10	한국소비자 교육원 충남보령지부	100	소비자교육 및 의식조사 등
11	재 향군인회 보령 여성회	100	향군사업 및 활동지원

5) 아동 복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한 복지행정으로서는 적절한 교육이나 보육을 받을 수 없고 학대, 유기, 부모의 결별 등으로 받는 생활의 장애,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활동이 어려운 생활기능 장애, 아동의 생활에 직접 악영향을 끼치는 유해환경, 공해, 비교육적 시설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장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활과 순조로운 성장을 돕는 행정이다.

(1) 연혁

- 1961년 아동복지법 제정: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등 아동 복지시설을 지정하고 아동학대 금지를 규정화하였으며 아동은 18세 미만, 임신부는 출산 전후 3개월 이내의 여자로 규정.
- 1971년 군청에 부녀아동계를 설치.
- 1981년 아동복지법 개정: 보호대상을 전체아동으로 확대하여 5월 5일 어린이날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 및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이용료를 감면토록 함.
- 1985년 부녀아동계를 부녀청소년계로 이름을 변경하여 업무 추진.

(2) 아동복지 지원 사업 현황<()안은 2007년 실적>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행사 지원 -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지원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조치 - 시설 입소 및 보호기관에 의한 보호조치 시행(7명)
- 입양양육수당 지원 - 매월 1가정/10만 원 지원(18가정)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1인, 월/7만 원 지원(22명)
- 결식아동급식 지원 - 1식/3,000원 지원(1,043명)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 - 인, 월/7만 원 지원(2명)
- CDA(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인, 월/최대 3만 원까지(94명/11,451천 원)

(3) 아동복지시설

① 대천애육원

신흥동 647-2번지에 있는 요보호아동 양육시설로 건물 규모는 198㎡이며 57명의 요보호아동을 수용하고 있다. 1952년 7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억 400만 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다. 2006년에는 국비 1억 원,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을 지원하여 기능보강사업을 하였다.

② 보령애육원

남포면 창동리 568번지에 있는 요보호아동 양육시설로 건물규모는 100㎡이며 49명의 요보호아동을 수용하고 있다. 1952년 7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억 1,600만 원의 운영비를 보조한다. 2006년에는 국비 1,800만원, 도비 900만 원, 시비 900만 원을 지원하여 기능보강사업을 하였다.

6) 영유아 복지 행정

영유아란 영아(嬰兒=한 살 미만)와 유아(幼兒=1세부터 36개월 정도)의 합성어로 부모나 가족에 의해서는 정상적으로 양육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외부의 원조가 필요한 요보호 영유아는 물론 외부의 지원이 필요없는 일반 영유아까지 복지 대상에 포함한다.

(1) 영유아복지행정의 발달 과정

- 1961년 아동복지법 제정
- 1970년대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 운영 시작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
-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 도입
- 1989년 9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 사업 실시
- 1991년 1월 영유아 보육법 제정: 보육사업의 통합 일원화
-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 2004년 6월 12일 영유아 보육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 사업의 획기적 발전
- 2005년 12월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 도입과 보육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보육시설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2006년 11월 1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표준 보육과정 마련: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 전인적 발달을 위한 지식·기술·태도교육, 보육환경의 질을 높임.

(2) 보육시설 현황

구 분	개소수	정 원 (명)	현 원 (명)
계	55	2,851	2,170
국 공 립	4	273	208
법 인	13	991	713
민 간	27	1,415	1,123
가 정	11	172	126

(3) 보육시설 운영 지원

구 분	개소수	월 지원액(천원)	연간 지원액(천원)
8개 사업		569,600	6,835,200
차등보육료	17	240,000	2,880,000
만5세아 보육료	35	45,000	540,000
차량운영비	17	3,600	43,200
장애아 무상보육료	14	10,000	120,000
두자녀 이상 무상보육료	43	20,000	240,000
취약시설 지원	17	26,000	312,000
종사자 인건비	17	165,000	1,980,000
민간시설 영유아반 기본보조금	29	60,000	720,000

2. 의료보장 행정

의료보장행정은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 등으로 통상적인 가계지출 이외에 일시에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보험 또는 공적부조(公的扶助)라는 제도를 통해 가계파탄 등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보장행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전국민 의료보험

의료보험법은 1963년 제정, 공포하였으나 사회여건, 재정곤란 등의 이유로 시행치 못하다가 제4차 경제개발 6개년계획에 반영하여 1977년 1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시작하고 같은 해 7월, 5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까지 직장의료보험을 확대(후에 16인 이상, 다시 5인 이상, 결국은 모든 사업장 확대)하고 1980년대에는 1, 2차에 걸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거쳐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1989년에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전국민의료보험의 시대를 열었다.

(1) 연혁

-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 제정
-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

① 직장의료보험

- 1977년 7월 5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 1979년 7월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실시
- 1982년 12월 16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실시
- 1988년 7월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실시

②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 1979년 1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③ 지역의료보험

- 1981년 7월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
- 1981년 7월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
- 1988년 1월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 1989년 7월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전 국민의료보험 실시)

④ 의료보험의 통합 및 그 이후

- 1998년 10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지역의료보험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발족
-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족
- 2001년 7월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실시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 실시

(2) 피보험자 및 보험료 부과 상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별	지 역			직 장		
	피보험자	적용 인구	부과액	피보험자	적용 인구	부과액
2000	-	66,594	7,186	7,012	23,882	5,758
2001	22,643	63,059	8,065	8,375	26,368	13,903
2002	22,301	59,495	8,711	9,163	27,686	25,987
2003	21,900	56,116	9,399	10,123	30,322	22,614
2004	21,627	54,940	9,627	10,721	31,239	8,508
2005	21,071	49,501	9,260	11,375	32,517	8,098
2006	18,459	46,477	10,009	12,096	33,660	8,178
2007	18,159	44,004	14,882	13,576	35,795	20,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 2001~2004 직장 부과액은 9개시군 공교보험료 합산 고지금액

2) 저소득층 의료보호

1977년 1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1종, 자활보호자를 2종으로 하여 1종 보호자는 진료비를 전액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해 주고, 2종 보호자는 진료비의 85%(15% 본인부담)를 지원해 주며 차상위(次上位) 저소득층에 대하여도 희귀병환자는 1종, 만성질환자는 2종으로 하여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1) 의료보호대상자 현황(2008년 현재)

읍면동별	계		1 종		2 종	
	가구수	인원수	가구수	인원수	가구수	인원수
계	3,606	6,223	2,820	4,072	786	2,151
웅천읍	345	604	289	439	56	165
주포면	58	91	49	62	9	29
주교면	162	279	135	209	27	70
오천면	174	277	144	196	30	81
천북면	134	199	115	158	19	41
청소면	129	201	103	138	26	63
청라면	181	296	154	238	27	58
남포면	297	479	260	366	37	113
주산면	156	242	137	180	19	62
미산면	70	132	56	82	14	50
성주면	179	345	135	218	44	127
대천1동	308	559	224	300	84	259
대천2동	167	282	125	170	42	112
대천3동	239	424	193	292	46	132
대천4동	785	1,421	508	722	277	699
대천5동	222	392	193	302	29	90

(2) 진료비부담금 지원 상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07	2006	2005
금액	2,002	1,719	1,195

3. 장묘 행정

1) 개요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뿌리깊은 매장풍습 때문에 날로 늘어나는 묘지가 국토를 잠식하여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조상을 잘 모셔야 한다는 효 사상을 넘어서 조상을 좋은 곳에 모셔야 후손이 번창한다는 믿음으로 풍수지리에 의한 명당을 찾고, 조상묘역을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꾸며 자신을 과시하는 그릇된 풍조까지 합세하여 매장문화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점을 가져왔다.

일찍이 공동묘지를 만들어 이용토록 하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기피하고 자신의 산이나 농경지 등에 묘를 써왔으며 장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으로 사설묘지, 호화묘지를 합부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관습적으로 행하여지는 묘지의 설치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장례문화도 이제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전통가치관의 변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묘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60%, 전국적으로 15%(2005년 기준)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어 무분별한 묘지설치도 둔화되고 있다.

2) 묘지 설치 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묘지

- ① 개인묘지 : 30㎡ 이내 비석 1개, 상석 1개, 기타석물 1개(쌍)
- ② 가족묘지 : 100㎡ 이내(기당 10㎡ 이내, 합장은 기당 15㎡ 이내) 비석, 상석, 기타 석물은 개인묘지와 같음
- ③ 중중묘지 : 1,000㎡ 이내(기당 10㎡ 이내, 합장은 기당 15㎡ 이내) 비석, 상석, 기타 석물은 개인묘지와 같음
- ④ 묘지를 쓸 수 없는 곳 :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기타 문화재보호법·도로법·하천법·군사시설보호법·사방사업법 등에 고시한 구역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등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

(2) 납골시설

- ① 개인납골묘 : 10㎡이내

- ② 가족납골묘 : 30m² 이내
- ③ 중중, 문중납골묘 : 100m² 이내
- ④ 종교단체납골묘 : 500m² 이내
- ⑤ 재단법인납골묘 : 면적제한은 없음, 폭 5m 이상 진입로 및 주차시설 확보
- ⑥ 납골묘를 쓸 수 없는 곳 : 묘지를 쓸 수 없는 곳과 같다.

※ 재단법인납골묘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3)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일제 때부터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 대부분 조성되었다. 보령지역의 공동묘지는 다음과 같다.

보령시 공동묘지 현황

읍면동	위치	지적(m ²)	지목	설치시기	가능 분묘 수
계		1,124,097			98,845
동대동	소계	40,463			4,046
	동대동 산8-1	12,496	묘지	1962.09.14	4,046
	동대동 산8-3	27,967	임야		
남곡동	소계	26,238			2,624
	남곡동 40-2	1,091	묘지	1962.09.18	2,624
	남곡동 41-3	17,157	묘지		
	남곡동 산45	7,990	묘지		
웅천읍	수부리 산33-1	85,209	묘지	1919.02.05	8,558
	수부리 산33-3	141			
	수부리 산33-4	98			
	수부리 산33-6	59			
	소항리 산 3-1	26,146	묘지	1962.09.14	2,615
	황교리 산20	20,781	묘지	1962.09.14	2,496
	황교리 산143-3	298			
	황교리 산143-4	91			
	황교리 산143-5	520			
	황교리 산144-3	3,274			
노천리 산25-1	3,104	묘지	1962.09.14	411	
노천리 산25-4	1,012				
주교면	주교리 산38-1	16,114	묘지	1962.09.14	2,380
	주교리 산38-6	1,897			
	주교리 산38-7	5,794			
	은포리 8-1	1,333	묘지	1962.09.14	4,066
	은포리 산2-1	9,354			

	은포리 산2-8	29,975			
	관창리 382-54	6,141	묘지		
	관창리 382-57	8,369		1962.09.14	1,577
	관창리 382-58	1,259			
오천면	외연도리 산506	496	묘지		
	외연도리 산506	1,884		1962.09.26	1,150
	외연도리 산422	9,124			
	효자도리 산115	6,843	묘지	1962.09.26	684
	교성리 산7-1	496	묘지		
	교성리 산7-2	56,529		1919.01.05	5,772
	교성리 산7-3	496			
	교성리 산7-4	198			
	갈현리 산63	6,942	묘지	1962.9.26	1,398
	갈현리 산67	7,041			
	오포리 산6	42,446	묘지	1962.09.26	4,245
천북면	하만리 산14	79,621	묘지	1962.08.22	8,093
	하만리 산14-2	1,309			
	낙동리 산2-1	37,884	묘지		
	낙동리 산2-4	99		1962.08.22	3,858
	낙동리 산2-17	99			
	낙동리 산2-20	496			
	신덕리 산63-1	40,463	묘지	1962.08.22	4,046
	학성리 산43-1	5,256	묘지	1962.08.22	526
청소면	진죽리 산3	39,769	묘지	1962.09.26	6,655
	진죽리 산49	26,777			
	재정리 산19-1	5,554	묘지	1962.09.26	555
	정전리 산2	12,496	묘지	1919.01.14	1,250
	장곡리 산103	33,322			
	장곡리 산112	22,498	묘지	1962.09.26	5,628
	장곡리 8-19	460			
청라면	향천리 산35	14,750	묘지	1962.09.26	2,142
	향천리 산35-2	6,668			
	옥계리 산50	18,446	묘지	1965.01.15	1,845
	장현리 산9	24,694	묘지	1962.09.26	2,469
남포면	옥동리 산7	8,529	묘지	1962.09.28	853
	제석리 산54-1	28,165	묘지		
	제석리 산55	5,554		1919.01.05	3,372
	옥서리 산15-1	19,254	묘지	1919.01.05	1,925
	신흥리 산112	7,555	묘지	1919.02.06	756
	양항리 산36	11,405	묘지	1918.12.26	1,141
	양기리 622-8	23,802	묘지		
	양기리 3-5	496		1919.01.05	2,628
주산면	신구리 산63-1	30,942	묘지	1965.1.15	-
	신구리 산79-2	31,736			

	창암리 산6	5,950	묘지	1919.01.18	-
	창암리 산7	25,746			
	화평리 산7	7,736	묘지	1919.01.05	1,154
	화평리 산8	9,223			
	화평리 산28	9,324			
화평리 산28-3	1,690				
	화평리 산28-4	528			
미산면	풍계리 산42	28,076	묘지	1965.01.15	2,808
	은현리 산59	15,323	묘지	1965.01.15	1,532
	삼계리 산25	7,701	묘지	1965.01.15	770
	대농리 산3	6,654	묘지	1965.01.15	665
성주면	개화리 산6-1	47,802	묘지	1965.01.15	4,780

4) 공설 공원묘지

(1) 보령모란공원

보령군 당시인 1994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년에 장사 등에 관한법률로 변경)에 의거 성주면 개화리 산 42-6번지에 174,500㎡ 규모의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다.

공설공원묘지의 이름을 보령공원이라 하였다가 모란공원으로 바꾸었다. 총 매장가능기수는 3,016기이고 2007년 말 현재 분양한 기수는 1,285기이다.



보령 모란공원

또한 235.6㎡ 규모의 납공당을 지은 바 총 입기가능 기수는 2,160기이며 2007년 말 현재 입기 수는 1,922기이다.

(2) 수부리 공원묘지

웅천읍 수부리 산 33-1번지에 있다. 1997년 12월에 완공한 이곳 공원묘지는 면적 25,745㎡ 매장가능기수는 1,294기이고, 2007년 말 현재 3기가 분양되었다.

5) 화장장

보령시에는 화장장(火葬場)이 없어 홍성군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공설화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독자적인 화장장의 설치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법 동조 제2항(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시장, 군수, 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에 의거 홍성군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

보령뿐 아니라 서천, 청양, 예산 등 홍성군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홍성군화장장의 유지 및 증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보령시의 홍성화장장 시설비 부담액은 2003년과 2004년 2개년에 걸쳐 4억 5,400만 원이다.

4. 보건 행정

1) 연혁

1952년 당시 대천면과 웅천면, 청소면 등 3개소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주민들에 대한 진료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56년 12월 1일에는 대천보건진료소를 보령보건소로 승격시키고 웅천면과 청소면의 보건진료소를 폐지하였다.

1965년에는 각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였고, 1971년에는 각 읍면사무소에 보건요원(결핵관리요원, 가족계획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함께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였다. 1978년에는 일부 규모가 큰 읍면에는 모자보건요원을 배치하여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도 관리하였다.

1983년에는 도서낙도와 오지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무의촌 주민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였으며 1995년에는 3개의 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보건진료를 꾀하고 있다.

2) 주요 보건 행정

(1) 전염병 예방

1971년부터 보건소와 각 읍면에 결핵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펼쳤으며 각종 법정전염병(1종, 2종, 3종으로 구분)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예방접종과 취약지역 방역, 그리고 여름철 파리, 모기 등 해충구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일단 발생한 전염병 환자는 특별 관리를 통하여 확산을 막는다.

① 예방접종 실적

단위 : 명

주 사 명	2007	2006	2005	2000	1990	1980	1970	1960
콜 레 라					1,835	72,946	102,100	
장 티 푸 스	2,950	1,485	722	1,705	6,881	48,266	35,681	43,018
두 창							11,610	10,267
디 피 티	4,450	4,499	4,219	3,989	7,462	9,173	7,5709	
일 본 뇌 염	4,079	3,739	3,810	2,855	9,547			
홍 역	1,529	1,487	1,545	2,492	7,160	2,910		
간 염	2,287	2,301	2,226	2,045	7,161			
폴 리 오	2,663	2,694	1,896	3,398	6,093	8,587		
독 감	26,658	25,802	29,774	22,327				
유행성출혈열	1,955	2,344	2,207	3,377				
결 핵	451	470	572	673	5,084	7,633	11,409	
수 두	683	539	552					
티 디	1,280	1,326	1,303					

② 전염병 발생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7	2006	2005	2004
계		58	65	33	32
제1군	세 균 성 이 질			1	2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1
	장 티 푸 스		1		
제2군	홍 역	1			1
	유행 성 이 하 선 염	6		1	2
	파 상 풍				1
	수 두	13			
제3군	말 라 리 아	1			
	쯔쯔가무시증	33	58	26	25
	유행 성 출 혈 열	1	4	2	
	렘 토 스 피 라 증	1	2		
	브 루 셀 라 증	1		3	

(2) 모자보건사업, 임신부 관리

1978년부터 보건소와 대천읍, 웅천, 주포, 천북, 청소, 청라, 미산면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모든 면에 모자보건요원을 배치하여 임신부 및 영유아를 등록시키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왔다. 그 주요내용은 정기적인 산전(産前)관리, 상담, 건강검진, 임부(妊婦)체조, 기형아 검진, 산후관리, 필요 약제 보급, 영유아 등록관리 및 선천성 문제아 관리 등 다양하다.

① 임신부 관리실적

단위: 명

구 분	2007	2006	2005	2000	1995	1990	1985	1980	비고
임산부	625	421	264	286	325	209	2,486	1,828	
영유아	720	722	690	1,090	867	4,150	4,740	7,810	

② 임신부 및 영유아를 위한 사업실적

단위: 회/명

구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2007	2006	2005	2004
임산부	임부등록관리 및 건강검진	정기적인 산전관리 및 상담-매월 둘째주 금요일, 셋째주 화요일 직장인을 위하여 매월 넷째주 토요일	2,474	2,227	1,675	1,342
	임부출산교실 운영	외부전문강사초빙 매월 둘째주 금요일 임부체조교실 및 교육	383	525	292	285
	임부초음파 검진의뢰서 발급	등록된 임부에게 매월 무료초음파 검진 의뢰서 발급	2,150	2,042	1,721	1,648
	태아 기형아 검진 의뢰서 발급	임신 16주~20주사이 기형아검진(트리플)의뢰서발급	359	242	187	
	제대(臍帶)셋 및 배냇저고리 배부	임신 36주 1회 지급	394	280		
	영양제(철분제) 지급	임신 20주부터 매월 1회 지급	1,699	1,484	1,321	1,248
	유축기대여 사업	보령시 관내 거주 수유부 1개월 대여	103			
영유아	영유아 등록 관리 및 건강검진	매주 월요일,목요일 건강관리 및 상담	6,500	6,830	7,200	6,90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신37주 미만 또는 체중 2,500g 미만 출생아	28	17	14	12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출생3~7일이내 검사(갑상기능저하증 외 5종)	834	851	717	710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출생1개월이내 신생아에게 선천성 난청 조기발견을 위하여 청각난청 검사 실시(보건복지부시범)	228			
	베이비 마사지 교실 운영	출생 만2개월~6개월 영유아 및 부모	50			

(3) 성인병, 노인성, 희귀성 환자 등록관리 및 지원 현황

(단위: 명/천원)

구분	병명	사업내용	2007	2006	2005
생활습관	당뇨	환자등록관리	4,981	4,947	4,649
	고혈압		1,468	1,516	1,349
노인성	치매	환자등록관리	297	257	186
		투약비 지원	16,233	19,624	11,040
	백내장 등	검진환자수	60	50	
		수술환자수	35	30	
	요실금	지원자수	63	80	
전염성	한센병	환자등록관리	6	6	6
		약품지원	24	24	24
	에이즈	환자등록관리	4	4	4
		정기검진	2	2	2
희귀난치성		등록관리	63	57	50
		의료비 지원	176,148	163,386	158,392
암환자		지원자수	131	85	68
		의료비 지원	111,570	105,198	66,483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118	93	60
금연		등록관리	839	800	605

(4) 도서낙도 및 오지지역 주민진료

1965년에는 각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공중보건의를 배치한 데 이어 1983년에는 오지, 무의촌과 도서낙도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원을 두어 주민의 진료를 담당케 하였다.

특히 1983년부터는 보건지소 근무를 기피하는 일반 공중보건 의사 대신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필해야 하는 젊은 의사를 공중보건 의사로 임용하여 군복무 대신 일정기간 보건지소에 근무케 함으로써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연도별 공중보건 의사 배치 현황

단위 : 명

근무지별	2007	2006	2005	2000	1995	1990	1985	1980	1975
보건지소	22	22	24	16	17	18	8	7	10
보건소	6	7	8	3	3	5	3	1	-

(5) 의약업소 인허가, 안경업소 개설 및 지도감독단속

① 의료기관 현황(2007년 현재)

단위: 개소

지역	계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경업소
합계	109	7	50	18	22	12
웅천	9		4	1	3	1
주교	1		1			
천북	2		1		1	
청소	1		1			
동지역	76	7	43	17	18	11

② 약품 판매업소 현황(2007년 현재)

단위: 개소

지역별	계	약국	약방	한약방	한약도매	특수장소	의료기기
합계	87	44	9	5	1	8	20
웅천	6	4	1			1	
주교	3		1			2	
오천	4	1				3	
천북	2	1	1				
청소	2		1	1			
남포	1		1				
주산	4		2	1		1	
미산	1					1	
성주	2	1	1				
동지역	62	37	1	3	1		20

특수장소 : 약국이나 약방이 없는 지역에 지정한 약 판매소

(6) 가족계획사업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범국가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① 산아제한

1970년대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요원을 읍면까지 배치하여 농어촌 주민들에게 산아제한의 필요성을 계몽하고 콘돔 보급과 루프수술, 그리고 여성의 불임수술, 남성의 정관수술을 적극 권장하면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주민들을 설득 하였으나 쉽게 호응하지 않았다. 아들을 둘 이상 낳은 집에서는 피임에 참여하였으나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딸만 둔 집에서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낳겠다고 버티기 일쑤여서 시책 추진이 어려웠다.

② 가족계획으로 이름 변경

1970년대 중반에는 시책 이름을 가족계획으로 바꾸었으며 1980년대가 되자 전 공무원에게 불임수술 2-3명씩 목표를 주고는 책임지고 채우도록 강요하면서 매일같이 직원회의를 열어 실적을 확인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틈틈이 출장을 나가 일가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 이미 자녀가 있는 가임여성을 찾아다니며 피임수술을 강요(사정)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빚기도 하였고



- 가. 공무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을 두 자녀까지만 지급하고 셋째아이 이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 나. 갑종근로소득세의 자녀공제에서도 셋째아이 이하는 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 다. 마을의 가임여성이 100% 불임수술을 완료한 마을을 가족계획시범마을로 정하여 상사업비(賞事業費)를 지원하며
- 라. 가족계획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관이나 부서, 담당공무원을 표창하고
- 마. 예비군훈련장에 출장하여 가족계획을 홍보한 후 정관수술을 하는 자는 일정기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여 주는 등 갖가지 기발한 방법과 시책들을 동원하여 범국가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때 사용하던 구호들을 보면 처음에는 아들 선호사상 때문에 딸을 둔 사람들이 불임수술을 기피하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1980년대로 들어서면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로 변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고 절박한 표어로 바꾸어 인구증가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가족계획을 밀어부쳤다.

연도별 가족계획사업추진실적

단위 : 명

연도별	여 성				남 성	
	자궁내장치	임신중절	난관수술	피임약 및 기구보급	정관수술	콘돔보급
1968	1,230			7,698	66	
1969	1,900			7,800	88	
1970	1,900			7,040	27	
1971	1,600			8,040	28	
1972	1,600			9,140	69	
1973	1,527			9,371	71	
1974	1,684			13,108	60	
1975	1,327			12,625	56	
1976	1,400			10,699	41	
1977	1,161			17,942	128	
1978	616			7,345	63	
1979	589	323	766	369	46	333
1980	784	253	574	744	62	657
1981	706	336	552	1,139	118	1,027
1982	803	584	1,009	6,254	217	5,242
1983	2,452	801	1,503	237	421	420
1984	821	506	939	166	306	432
1985	669	495	726	114	282	395
1986	544	...	589	95	89	251
1987	570	...	530	1,142	98	4,118
1988	480	...	385	53	51	225
1989	343	...	244	38	27	175
1990	293	2	135	26	21	107
1991	215		86	6	12	142
1992	239		74	7	15	163
1993	221		86	13	42	159
1994	182		56	145	37	394
1995	309		91	12	53	56

자료: 보령시 통계연보 및 보건소 제공

③ 가족계획사업이 가져온 의식변화

위 표를 보면 1980년대까지 무리하게 추진한 실적이 나타나고 1990년대 들어서서야 조금씩 실적이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침내 1996년 정부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을 중단하였지만 그러한 동안 젊은이들의 의식구조가 차츰 ‘낳고 보자’에서 ‘적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고 뿌리깊던 남아선호사상도 눈에 띄게 낮아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의식구조의 변화는 가족계획사업이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게다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부부맞벌이가 보편화됨에 따라 육아의 어려움과 교육비의 증가 등은 여성들의 출산기피 현상에 부채질을 하여 급격한 출산을 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④ 출산장려로 바뀐 정책

이제는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 아들·딸 구분하지 않고 1-2명의 자녀만 두는가 하면 무자녀 가정도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결혼을 기피하는 독신녀가 늘고 있어 인구증가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가 너무 빨라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범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장려시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각급 직장의 산모에게 주는 출산휴가의 기간을 늘리고

나. 남편에게도 육아휴가를 주며

다. 회사에 탁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아기를 가진 주부직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주민이 아기를 낳으면 출산수당을 지급하며

마. 셋째 아이부터는 출산수당의 액수를 높여 아이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고

바.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의 가정주부가 애기를 낳으면 출산도우미를 일정기간 파견하여 가사(家事)를 도와주는 등 아기를 낳는 가정에 갖가지 인센티브를 주며

사. 아파트 청약에서 셋 이상 아이를 둔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사회 각계 각 분야에서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펼치면서 출산율을 높여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보고자 안간힘을 써도 여성 1인당 출산아 수가 OECD국가 중 가장 적은 나라가 되었다.

⑤ 가족계획사업 결과

가난을 벗기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살기 위해 뛰고 또 뛰었던 1960~70년대, 그 때는 폭발하는 인구증가의 억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판단하여 강력히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가족계획사업이 오히려 저출산(底出産)의 의식을 가지게 하여 인구증가의 둔화와 인구의 고령화를 불러온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를 부채질하여 대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효를 중시하던 전통적 가치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지 적은 수의 자녀를 두다 보니 지나친 애정과 무분별한 교육으로 전체적인 교육비 증가 등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